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9조의14제2호”를 “제19조의16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9조의14제3호”를 “제19조의16제3호”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제19조의14”를 “제19조의16”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9조의14제4호”를 “제19조의16제4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9조의14제4호”를 “제19조의16제4호”로 한다.

제24조의6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으로 하고, “신용카드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신용카드가맹점에 통지한 경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제6조13제1항제1호”를 “제6조의13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외의 본문 중 “제6조13제1항제2호”를 “제6조의13제2항제2호”로, 같은 항 단서 중 “산정기관”을 “산정기간”으로 하며, 제5항 중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이후의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제1호 중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를 “0.8%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 수료율 이하”를 “1.3%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과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 대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은 <별표 6>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별표 1의3 제1호 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하고자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가.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나.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인하여 임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별표 4 제4호 단서 중 “이 경우 특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에 직접 귀속시켜야 함”을 “이 경우 마케팅비용은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하며, 특

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에 직접 귀속시켜야 함”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5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4] 관련 서류”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2] 관련 서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u>제19조의14제2호</u>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받거나 등록 받은 업별로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과 대출금, 할인어음, 팩토링, 유가증권, 미수금, 가지급금,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 ② ~ ⑦ (생략)</p> <p>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p> <p>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u>제19조의14제3호</u>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매분기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 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카드자산, 신용카드 미사용약정,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p>	<p>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p> <p>----- <u>제19조의16제2호</u>-----</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p> <p>① -----</p> <p>--- <u>제19조의16제3호</u>-----</p> <p>-----</p> <p>-----.</p>

<p><u>제4호</u>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업자(다만, 법 제2조제16항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u>제4호</u>----- ----- ----- ----- ----- -----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의6(가맹점 관리사항)</p>	<p>제24조의6(가맹점 관리사항)</p>
<p>①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u>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u>신용카드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u>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 ----- ----- ----- ----- ----- ----- <u>신용카드가맹점에 통지한 경우</u> ----- -----.</p>
<p>③ ~ ④ (생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p>	<p>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p>
<p>①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본문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u>5년</u>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サービ</p>	<p>3. ----- ----- ----- <u>3년</u>----- -----</p>

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③ ~ ⑥ (생략)

제25조의5(영 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영 제6조13제1항제1호에 따른 영 세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 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연간(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2억 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 카드가맹점은 영 제6조13제1항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영 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기준) ① -----

제6조의13제2항제1호-----

1. ~ 5. (현행과 같음)

② -----

----- 제6조의13제2

제2호에 따른 중소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연간(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관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총수입 금액, 매출액,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본문 생략)

1.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항제2호-----

----- 산정기간-----

----- 신용카드 매

----- 출이 발생한 이후의 기간에 대

----- 한-----

-----.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현행과 같음)

1. -----

가맹점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
율(이하 “직전 연도 평균 가맹
점수수료율”이라 한다)의 100
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
료율 이하

2. 연간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
하고 3억 원 이하인 가맹점 :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
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평
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은 <별
표 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다.

③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
금융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직
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과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인터
넷 홈페이지에 매년 1월 31일
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 0.8% 이하

2. -----
----- :
1.3% 이하

③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
융업협회는 모든 신용카드업자
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
료율과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
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월 31
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전 연도 평
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은 <별
표 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다.